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19-3 외 (토지)
의	뢰	인	우리자산신탁(주) 대전지역본부
감정	평가서	번호	경일(대전)25-250516-2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90번길 11 미래빌딩 6층(탄방동) ☎ (042)478-5550 FAX.(042)478-5551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하갑선

善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대전지사장

하 갑 선



	감정평가액		칠십구억구백이십	J오만삼 쳔	원원정	d(\\7,909,253,0	00)		
	의 뢰 인		우리자산신탁(주)	대전지역분	로부	감정평가 목적	공매(NPL)		
	채 무 자		無			제 출 처		우리지	산신탁(주)
,	소유자.		우리자산신탁(2	도) (수타지)	,	기준가치		시	장가치
	대상업체명)		144664(· // 1 ¬^i/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기준시점	조	사기간	작 성 일
	국목표시 등기사형 근거 등기사형			루증명서		2025.05.26		.05.22 - 5.05.26	2025.05.26
	공.	부(公簿)(의뢰)	٨	 	정	감 정 평 가 액		
 감	종 류	2	면적 또는 수량(m²)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점 정	토지		56,825	토지		56,825		=	7,909,253,000
평			이	하	여		백		
가									
내									
용									
	합 계								₩7,909,253,000
심 심	본인	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	시된 자료	를 기	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	게 심사현	한 결과
사	이 김	감정	명가내용이 타당하다	가고 인정히	누므로	이에 서명날인합	니다		
확 인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	*7	B- 9	K,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소재 "삼거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우리자산신탁(주) 대전지역본부의 공매(NPL)를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대상 물건

■ 토지

기호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m²)	사정면적 (m²)	지목	도로조건	형상 지세	이용상황	용도지역	개별지가 (원/㎡) (2025)	비고
1	삼거동 619-3	13,692	13,692	목장 용지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전	계획관리	62,500	-
2	삼거동 619-4	12,433	12,433	목장 용지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전	계획관리	61,900	-
3	삼거동 619-5	7,495	7,495	목장 용지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전	계획관리	61,900	-
4	삼거동 619-9	3,272	3,272	목장 용지	중로한면	부정형 완경사	전, 도로 등	계획관리	82,000	-
5	삼거동 산60-1	19,933	19,933	임야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자연림	보전관리	7,790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5월 26일로 하였습니다.

■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5월 22일 ~ 2025년 05월 26일 입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 대상토지 기호(4)는 대부분 기호(1~3) 및 기호(5) 진입도로로 이용중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는바, 참고바랍니다.
- 대상토지 기호(5)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바, 참고 바랍니다.
- 본 감정평가서는 공매(NPL)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담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평가목적을 달리할 경우 평가서의 기재내용, 감정평가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П.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 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Ⅲ. 감정평가액 산출

- 1.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산식 : 표준지공시지가 \times 시점수정 \times 지역요인비교 \times 개별요인비교 \times 그 밖의 요인 보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 (2025.01.01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 분	소재지	면적 (m²)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m²)
가	삼거동 611	1,289	답	계획관리	답	맹지	부정형 완경사지	79,500
나	삼거동 산43	22,711	임야	보전관리	조림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지	14,100

2) 시점수정

본건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 당시 해당월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습니다.

기 간	지가변동률(%)	산 식
2025.01.01 ~ 2025.05.26	0.767	(1 + 0.00605) x (1 + 0.00186 x 2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계획관리지역)	(1.00767)	≒ 1.00767
2025.01.01 ~ 2025.05.26	0.156	(1 + 0.00045) x (1 + 0.00128 x 2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전관리지역)	(1.00156)	= 1.00156

3)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동등합니다. (1.000)

4)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전)

[본건 기호(1, 2) / 표준지 기호(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대체로 유사합니다	
자연 조건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1.00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등			
획지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등	0.90	대상토지가 형상 및 면적 등에서 열세합니다.	
조건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등	0.90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조건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등	1.00		
기타 조건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년	비교치		0.900	

■ 농경지대(전)

[본건 기호(3) / 표준지 기호(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대체로 유사합니다	
자연 조건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1.00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등			
획지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등	0.95	대상토지가 면적 등에서 열세합니다.	
조건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등	0.93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조건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년		0.950		

■ 농경지대(전)

[본건 기호(4) / 표준지 기호(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대체로 유사합니다	
자연 조건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1.00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등			
획지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등	0.30	대상토지는 대부분 도로로 열세합니다.	
조건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등	0.30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조건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등	1.00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년		0.300		

■ 임야지대

[본건 기호(5) / 표준지 기호(나)]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등	1.05	대상토지가 도로조건 등에서 우세합니다.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 조건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조장의 정도		대체로 유사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등	1.00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비교치		1.050	

5) 그 밖의 요인의 보정

① 그 밖의 요인 보정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 (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공시지가 × 시점수정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자료

▷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면적 (m²)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기준시점	평가 목적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1	삼거동 606	3,980	답	계획관리 답	부정형 세로(불)	2024.02.26	공매 (국공유재산)	245,000 (77,100)
2	삼거동 411-2	5,452	답	계획관리 답	부정형 맹지	2023.12.12	담보	255,000 (77,100)
3	삼거동 619-2	307	전	계획관리 전	부정형 맹지	2023.10.27 법원경매		185,000 (77,100)
4	삼거동 361-2	1,152	답	계획관리 답	부정형 맹지			340,000 (79,500)
5	양동 산113	610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사다리 맹지	2023.07.19	법원경매	35,000 (4,760)
6	삼거동 산66-17	1,326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부정형 맹지	2023.12.12	담보	77,000 (29,400)
7	삼거동 산66-9	66,464	임야	계획관리 자연림	부정형 맹지			172,000 (44,600)
8	양동 산102	40,264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부정형 세로(불)	2024.07.02	시가참고	37,000 (3,450)

기호	소재지	면적 (m²)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기준시점	평가 목적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9 (본건 기호1,2)	삼거동 619-3,-4	26,125	목장 용지	계획관리 목장용지	부정형 맹지	2022.12.21	공매(NPL)	151,000 (61,100)
10 (본건 기호3)	삼거동 619-5	7,495	목장 용지	계획관리 목장용지	사다리 맹지	2022.12.21	공매(NPL)	160,000 (61,100)
11 (본건 기호4)	삼거동 619-9	3,272	목장 용지	계획관리 목장용지	부정형 중로한면	2022.12.21	공매(NPL)	178,000 (81,200)
12 (본건 기호5)	삼거동 산60-1	19,933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부정형 맹지	2022.12.21	공매(NPL)	49,000 (8,020)

[※] 사례도면은 후첨 "상세위치도" 참조

▷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면적 (m²)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Α	삼거동 250	487	답	계획관리 답	부정형 중로한면	2024.01.10	132,300,000	271,000 (37,100)		
비고	비 고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 토지가격: 132,300,000원 / 487㎡ ≒ 272,000원/㎡									
В	삼거동 253	1,083	답	계획관리 답	부정형 중로한면	2022.02.07	425,000,000	392,000 (38,300)		
비고	고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 토지가격: 425,000,000원 / 1,083㎡ ≒ 392,000원/㎡									
С	양동 산102	40,264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부정형 세로(불)	2025.04.14	1,525,000,000	37,000 (3,470)		
비고	-	의 거래사리 격 : 1,525,0		/ 40,264m	² = 38,000	원/m²				
D	양동 산104-7	1,572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자루형 세로(불)	2022.05.31	50,000,000	31,000 (3,650)		
비고	_ 트지마이 거래사레인니다									

[※] 사례도면은 후첨 "상세위치도" 참조.

[※] 출처: 감정평가정보(KAPA HUB PLUS)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 인근 지가수준

위치	도로조건	지가수준	비고
본건 기호(1~4) 유사 토지	세로변	200,000원/m²	계획관리지역
본건 기호(5) 유사 임야	세로변	60,000원/m²	보전관리지역

위치, 형상, 접근성, 환경 등에 따라 지가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경매시장 추이(1년간 평균 낙찰가율)

(인포케어, www.infocare.co.kr)

지역통계	광주			광산구			삼거동		
구분	낙찰가율 (%)	낙찰율 평균(%)	낙찰건수 (건)	낙찰가율 (%)	낙찰율 평균(%)	낙찰건수 (건)	낙찰가율 (%)	낙찰율 평균(%)	낙찰건수 (건)
토지/전	59.01	70.90	27	92.03	90.18	12	0	0	0
토지/임야	57.15	62.95	10	79.26	75.84	3	0	0	0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출 및 결정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지가수준, 경매시장 추이, 평가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건 평가시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합니다.

■ 비교표준지 (가)

사례기준	사례가격 ^{*1}	시점수정 ^{※2}	지역요인*3	개별요인*4	산출단가(A) (원/m²)	격차율	보정치
표준지 평가	245,000	1.01586	1.000	0.855	212,797	(A/B)	결정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B) (원/m²)	2.656	2.65
시점수정	79,500	1.00767	-	-	80,110	2.030	2.05

*1 사례선택

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이용상황 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기 "평가사례(1)"을 비교사례로 선택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고
2024.02.26 ~ 2025.05.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계획관리지역)	1.586	1.01586	2025년 4월 연장적용

*3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등합니다. (1.000)

※4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 (농경지대(전))						
가로 접근 환경(자연) 획지 행정 기타						격차율
-	0.95	1.00	0.90	1.00	1.00	0.855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대비 접근조건(도로조건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합니다.

■ 비교표준지 (나)

사례기준	사례가격 ^{*1}	시점수정*2	지역요인*3	개별요인*4	산출단가(A) (원/m²)	격차율	보정치
표준지 평가	35,000	1.01799	1.000	1.620	57,720	(A/B)	결정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B) (원/m²)	4.087	4.08
시점수정	14,100	1.00156	-	-	14,122	4.007	4.00

※1 사례선택

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이용상황 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기 "평가사례(5)"을 비교사례로 선택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고
2023.07.19 ~ 2025.05.26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전관리지역)	1.799	1.01799	2025년 4월 연장적용

*3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등합니다. (1.000)

※4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 (임야지대)						
가로	접근	환경(자연)	획지	행정	기타	격차율
-	1.20	1.35	-	1.00	1.00	1.620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대비 접근조건(임도배치, 취락 및 기타 편의시설 등과 접근성 등) 및 자연조건(형상 및 인근 환경 등)에서 우세합니다.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기 호	공시지가 (원/m²)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²)	적용단가 (원/m²)	비고
1,2	79,500	1.00767	1.000	0.900	2.65	191,061	191,000	-
3	79,500	1.00767	1.000	0.950	2.65	201,676	202,000	-
4	79,500	1.00767	1.000	0.300	2.65	63,687	64,000	-
5	14,100	1.00156	1.000	1.050	4.08	60,498	60,000	-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면 적(m²)	단 가(원/m²)	시산가액(원)	비고
1	13,692	191,000	2,615,172,000	-
2	12,433	191,000	2,374,703,000	-
3	7,495	202,000	1,513,990,000	-
4	3,272	64,000	209,408,000	-
5	19,933	60,000	1,195,980,000	-
합 계	56,825	-	7,909,253,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

산식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1)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①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사유

본건과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상기 "거래사례(A)"를 "기호(1 ~ 4)","거래사례(C)"를 "기호(5)"의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② 거래사례 선정 내역

기호	소재지	면적 (m²)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A	삼거동 250	487	답	계획관리 답	부정형 중로한면	2024.01.10	132,300,000	271,000 (37,100)
비고	고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 토지가격 : 132,300,000원 / 487㎡ ≒ 272,000원/㎡							
С	양동 산102 40,264 임야 보전관리 부정형 사건02 40,264 임야 보전관리 부정형 사건인 서로(불) 2025.04.14 1,525,000,000 (3,470)							
비고	고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 토지가격 : 1,525,000,000원 / 40,264m² ≒ 38,000원/m²							

[※] 사례도면은 후첨 "상세위치도" 참조.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액을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상기 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요인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0)

3)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고
2024.01.10 ~ 2025.05.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계획관리지역)	1.756	1.01756	2025년 4월 연장적용
2025.04.14 ~ 2025.05.26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전관리지역)	0.184	1.00184	2025년 4월 연장적용

4) 가치형성요인 비교

① 지역요인 비교

사례와 본건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동등합니다. (1.000)

②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전)

[본건 기호(1, 2) / 사례 기호(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0.87	대상토지가 도로조건 및 취락등과 접근성에서 열세합니다.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 조건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등			
획지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등	0.80	대상토지가 형상 및 면적 등에서 열세합니다.	
조건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등	0.00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조건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년		0.696		

■ 농경지대(전)

[본건 기호(3) / 사례 기호(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0.87	대상토지가 도로조건 및 취락 등과 접근성에서 열세합니다.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 조건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등			
획지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등	0.84	대상토지가 형상 및 면적 등에서 열세합니다.	
조건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등	0.04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조건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년		0.731		

■ 농경지대(전)

[본건 기호(4) / 사례 기호(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0.87	대상토지가 도로조건 및 취락 등과 접근성에서 열세합니다.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 조건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등			
획지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등	0.27	대상토지가 형상 및 대부분 도로 등에서 열세합니다	
조건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등	0.27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조건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년		0.235		

■ 임야지대

[본건 기호(5) / 사례 기호(C)]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등	1.20	대상토지가 도로조건 및 취락, 편의시설 등과의 접근성에서 우세하빈다.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 조건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등	1.35	대상토지가 경사 및 형상, 인근 환경 등에서 우세합니다.	
	토양, 토질				
		조장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1.620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기호 사례단가		사정	시점	가치형성요인 시점		산출단가	적용단가	비고
기오	(원/m²)	보정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원/m²)	(원/m²)	미끄
1,2	271,000	1.000	1.01756	1.000	0.696	191,928	192,000	-
3	271,000	1.000	1.01756	1.000	0.731	201,579	202,000	-
4	271,000	1.000	1.01756	1.000	0.235	64,803	65,000	-
5	37,000	1.000	1.00184	1.000	1.620	60,050	60,000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면적(m²)	단가(원/m²)	시산가액(원)	비고
1	13,692	192,000	2,628,864,000	-
2	12,433	192,000	2,387,136,000	-
3	7,495	202,000	1,513,990,000	-
4	3,272	65,000	212,680,000	-
5	19,933	60,000	1,195,980,000	-
합 계	56,825	-	7,938,650,000	-

7) 합리성 검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7,909,253,000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7,938,650,000원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에 의해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 지	7,909,253,000	-

경일25-250516-203 2025. 05. 26 15:17:53

<u>토지 감정평가명세표</u>

페이지: 1

					-				페이지: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 직	덕 (m²)	감 정	평 가 액	비고
번호	그 세시	시민	용도	및 구조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I -I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19-3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13,692	13,692	191,000	2,615,172,000	
2	п	619-4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12,433	12,433	191,000	2,374,703,000	
3	П	619-5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7,495	7,495	202,000	1,513,990,000	
4	11	619-9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3,272	3,272	64,000	209,408,000	현황 대부분 도로
5	п	산60-1	임야	보전관리지역	19,933	19,933	60,000	1,195,980,000	
	합 계							₩7,909,253,000	
				이 하					

기준시점 : 2025. 05. 26

토지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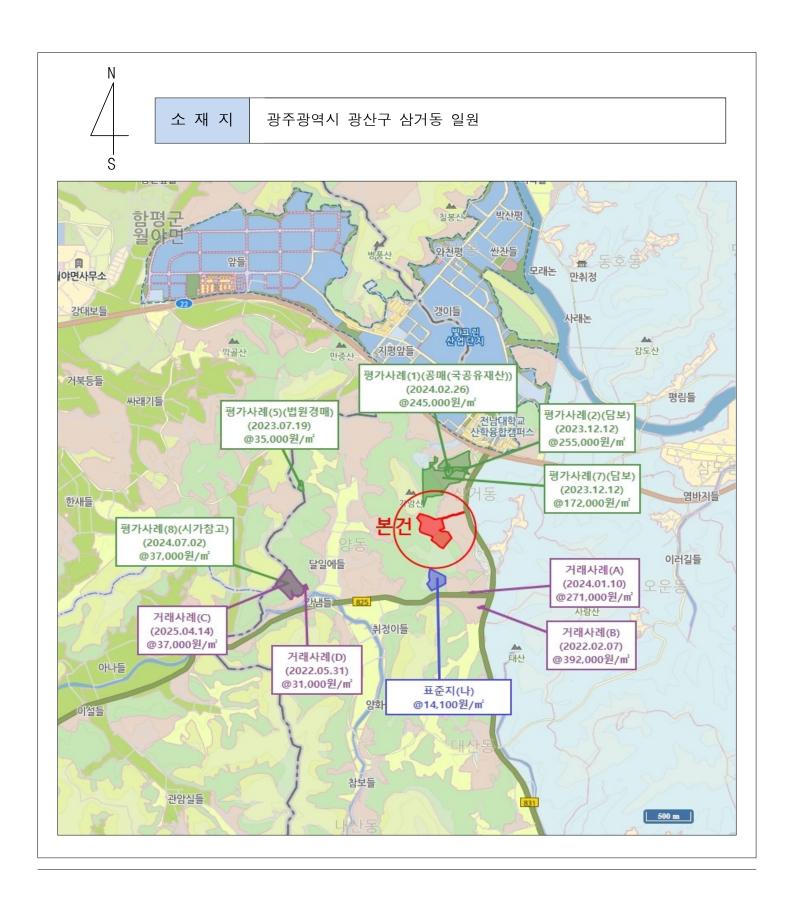
위 치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소재 "삼거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 위 환 경	인근은 지방도변 근린시설, 중소규모 공장, 후면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 통 상 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방도 및 국도가 통과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형 상 및 이 용 상 황	기호(1,2):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현 휴경상태)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사다리 완경사지로 전(현 휴경상태)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로 진입도로 및 일부 전(현 휴경상태)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상태입니다.
인 접 도 로 상 황	기호(1~3,5) 공히 기호(4) 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기호(4) 토지는 중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관 계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6-02-01)(삼거동 고인돌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6-02-01)(삼거동 고인돌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6-02-01)(삼거동 고인돌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임 대 상 황	
공부와의 차이 및 기타사항	기호(4)는 대부분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중에 있고, 기호(5) 임지상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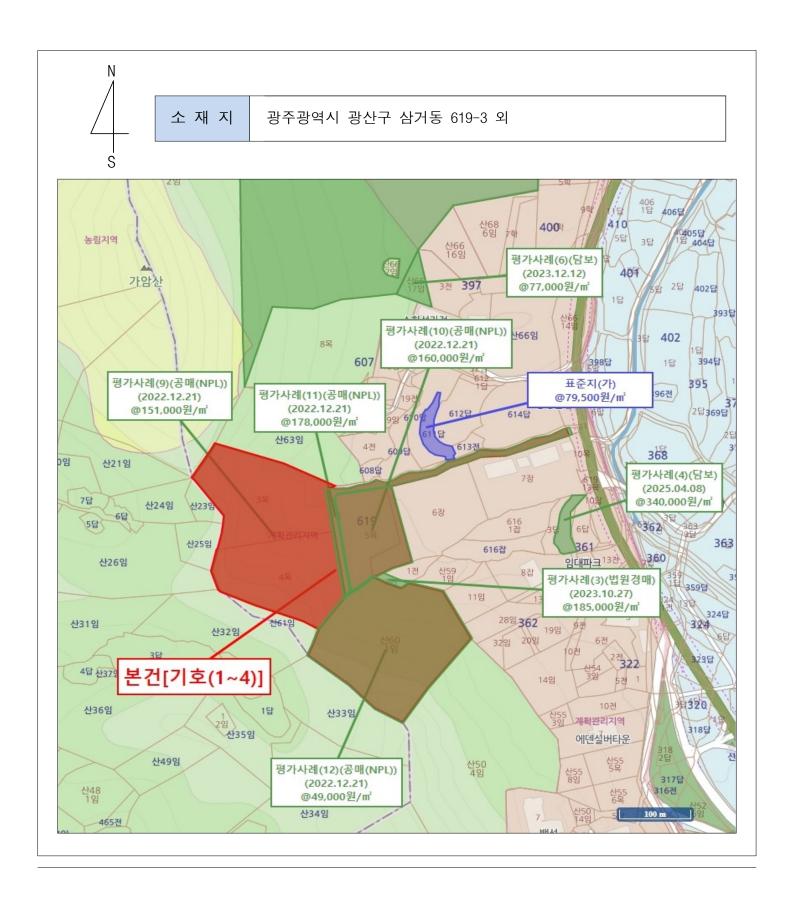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주 위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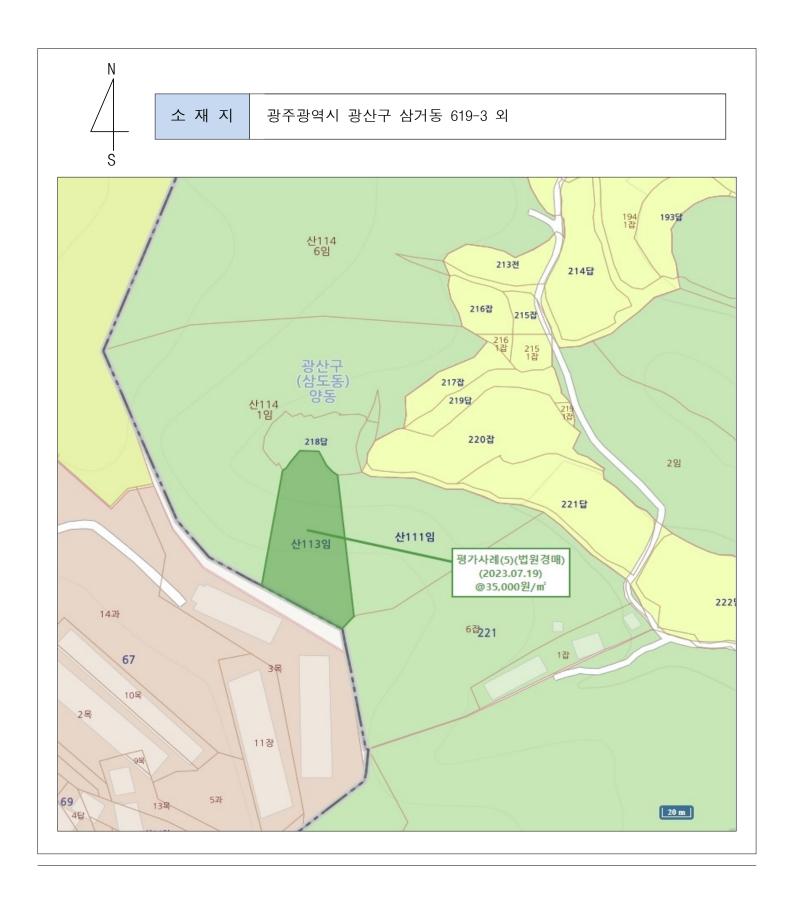
광 역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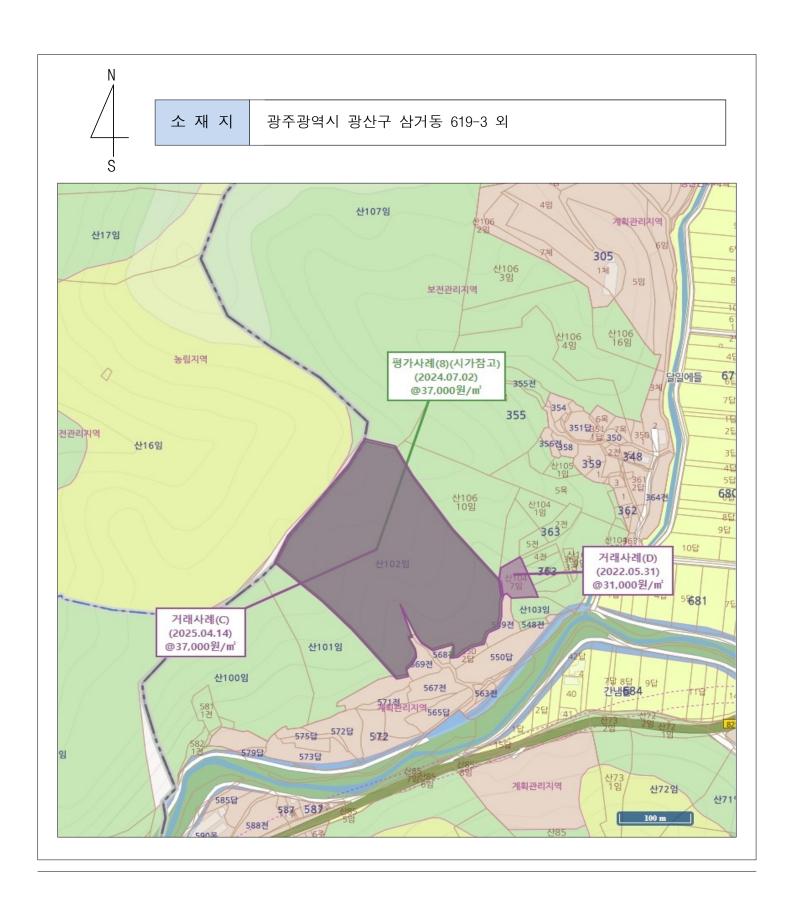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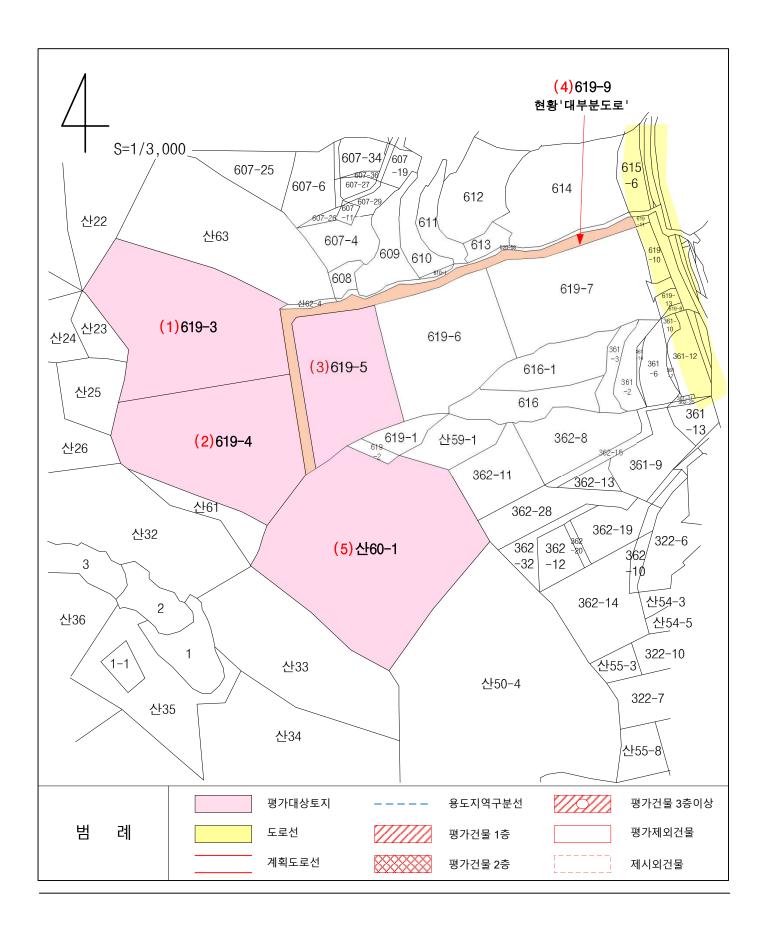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u>사 진 용 지</u>



【본건 전체전경】



【본건 전체전경】



【본건 기호(1~3,5) 전경】



【본건 전체전경】

<u>사 진 용 지</u>



【기호(4) 진입도로】



【기호(4) 진입도로】



【기호(5) 전경】



【주위전경】

<u>사 진 용 지</u>



【주위전경】